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치, 종교 관련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제한 규정 일부 삭제(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)
 -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, 강연, 모임 등을 위한 경우
 -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사용허가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조(사용허가 제한) 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, 강연, 모임 등을 위한 경우</u> 7. <u>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</u> <u>우</u>	제3조(사용허가 제한) (개정안과 같음)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
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 1. (생략) 2.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. <u>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</u>	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제2조에 의해 허가
받은 사용자는 사용
일 전일까지 사용료
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